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9. 5. 10.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4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9년 4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9. 5. 1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조 성 대

가. 개정이유

신정·구수 재건축조합에서 시행하여 '99년 5월경 입주예정인 엘지(LG)아파트가 신수동과 상수동으로 분리되는바, 합리적인 행정동(洞) 경계 조정으로 생활권, 경제권이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동(洞) 경계 조정으로 행정능률 향상및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o 신정·구수 재건축지구의 신수동 관할구역내에 있는 구수동중 일부(구수동 101번지 일대 40필지 0.004㎢)를 상수동으로 편입하여 동일 아파트가 2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야기되는 불편사항 및 불합리를 해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o 동 개정조례안은 신수동과 상수동 지역에 걸쳐 재건축된 엘지(LG)아파트가 '99. 5월경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으므로써 발생될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신수동 관할구역내에 있는 구수동중 일부를 상수동으로 편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중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o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수동 관할구역내에 있는 구수동(법정동)중 사업시행면적인 약 0.004㎢(1,134.8坪)를 상수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행정동 경계를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는 되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부 주민들은 초등학교 학구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부 주민의 불만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o 질의요지(채재선 위원) : 행정동 관할 변경으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o 답변요지(조성대 총무과장) : 주민 민원문제는 학구문제가 제일 크다고 봄.
동지역 개발이 완료되면 봉원천을 경계로 해서 신수동 관할로 재편입될 것으로 예상됨.

o 질의요지(신봉현 간사) : 재건축한 L.G 아파트의 번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o 답변요지(조성대 총무과장) : 지번이 신정동 30-1외 1필지로 신정동 30-1번지가 대표번지가 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9. 4.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신정·구수 재건축조합에서 시행하여 '99. 5월경 입주예정인 엘지(LG)아파트가 신수동과 상수동으로 분리되는바, 합리적인 행정동(洞)경계조정으로 생활권, 경제권이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동(洞)경계조정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신정·구수 재건축지구의 신수동 관할구역내에 있는 구수동중 일부(구수동 101번지일대 40필지 0.004㎢)를 상수동으로 편입하여 동일 아파트가 2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야기되는 불편사항 및 불합리를 해소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1995.12.29법률 제5069호) 제4조 제5항, 제6조, 제15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나. 협 의

- 서부교육청 : 2000년도 학구 검토시 종합적 판단예정
- 마포경찰서 : 의견 없음

다. 규제여부 : 해당 없음

라. 서울특별시와 행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사전협의〔행정13120-421('99.3.5)〕

마.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따로붙임)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관련, 별표1의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중 신수동란과 상수동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동사무소 명 칭	동사무소 소 재 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마포구	신수동	신수동371-18	현 석 동	신수동중 노고산동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구수동중 상수동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상수동	상수동 356-4	상 수 동 하 중 동 신 정 동 당 인 동	구수동중 구수동 101-49 도로를 기점으로 동101-44, 동101-3, 동99-3을 거쳐 동99-1에 이르는 경계 지역의 이남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1)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분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 관할	
			전지역 관할	일부지역 관할
(생 략)				
마포구	신수동	신수동 371-18	현석동 구수동	신수동중 노고산동 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상수동	상수동 356-4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당인동	
(생 략)				

개 정 안

(별표 1)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분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 관할	
			전지역 관할	일부지역 관할
(현행과 같음)				
마포구	신수동	신수동 371-18	현석동	신수동중 노고산동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구수동중 상수동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상수동	상수동 356-4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당인동	구수동중 구수동 101-49 도로를 기점으로 동101-44, 동101-3, 동99-3을 거쳐 동99-1에 이르는 경계 지역의 이남지역
(현행과 같음)				

경계조정후 현황(예상)

구 분	현 재			조 정			조 정 후		
	면적	세 대	인 구	면적	세 대	인 구	면적	세 대	인 구
신수동	0.67 ㎢	7,265 세대	21,181 명	0.004 ㎢			0.666 ㎢	7,265 세대	21,184 명
상수동	1.10 ㎢	4,929 세대	13,712 명	0.004 ㎢	538 세대	2,152 명	1.104 ㎢	5,467 세대	15,864 명